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05
----------	------

발의연월일 : 2025. 3. 27.

발 의 자 : 김대식 · 우재준 · 김선교
박덕흠 · 한지아 · 서지영
임이자 · 이헌승 · 정성국
윤영석 · 김승수 · 곽규택
조정훈 · 강경숙 · 이만희
김용태 · 김정재 · 김준혁
백종헌 · 김소희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해야 함. 퇴소한 18세 자립준비청년이 매년 1,500여 명 정도가 아동복지시설 안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 홀로서기에 도전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기 힘든 자립준비청

년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으로 겪는 것이 주거 안정임.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로 2020년(62.7%)보다 7% 상승하였음.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27.9% 정도가 학업을 중도 포기 또는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진학자 중 국가장학금 외 16.1%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교육은 취업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필수 요소로써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 신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생략)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②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